

##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009 ~ 1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9. 02. 13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정이유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민들의 보훈 의식을 더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.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)

-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-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어려운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-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다.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
라.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.(안 제5조)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-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-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
-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-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-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마. 재정적 지원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5조, 제16조제3항
-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

#### 나. 예산조치 : 2009연도 본예산에 반영(13,000천원)

- 재향군인회 6.25기념행사 : 9,000천원
- 재향군인회 회원 전적지 순례 : 4,000천원

####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### 라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(2) 입법예고(2008. 11. 24. ~ 12. 15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군인”이란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군인회”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“거창군 재향군인회”(이하 “재향군인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예우)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2.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3.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4.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예산의 지원)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
3. 군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
4.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
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6.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신청 및 정산)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교부절차, 실적보고,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